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구축·운영〉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43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2. 23.
3. 회부연월일 : 2026.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음.

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근거는 미비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전익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난관련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항공자산을 운용할 때에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9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회전익항공기 등의 항공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이하 “항공자산운용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항공자산운용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현황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u><신설></u>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 ----- ----- ----- <u>조와 제34조의9에서</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34조의9(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회전익항공기 등의 항공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이하 “항공자</u>

	<u>산운용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련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 구조 등을 위하여 항공자산을 운용할 때에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u> <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항공자산운용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u> <u>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④ 항공자산운용체계의 구축,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생략)	제34조의10(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현행 제34조의9와 같음)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① (생략)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u>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u>	② ----- ----- -34조의10제2항----- -----

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재난 상황 발생 시 회전익항공기 등 항공자산은 신속한 인명 수색 및 구조, 재난 대응에 필요한 물자의 수송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2015년 소방청 등 5개 기관이 수립한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용절차」는 재난 유형별로 주관기관이 헬기의 공역 관리와 지휘통제를 전담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용절차」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 (목적) 재난 발생으로 국가기관* 헬기의 합동대응 시 재난유형별 주관기관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헬기를 운영하는 국민안전처(육상·해양재난, 해상테러), 경찰청(일반테러), 산림청(산불), 국방부(지원) - (적용범위) 헬기 운용 국가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의 헬기 동시 동원시 적용
제2장 지원요청 및 절차	- 헬기 지원요청 사유 및 요청방법, 헬기 지원 절차 규정
제3장 통합지휘 및 훈련	- 통합지휘 시 단계별(준비·요청·출동·대응) 국가기관의 수행업무 규정 및 통합지휘를 위한 훈련 등 필요사항 규정
<표준운영절차 실행자료>	- 표준운영절차 실행을 위한 관련 법규, 헬기 배치·운영 현황, 국가기관 헬기 임무, 비상연락망 등

(자료 : 행정안전부, 산림청)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재난 유형이 다양화·대형화되면서 회전익항공기, 고정익항공기, 드론 등 다양한 항공자산이 동일한 재난

현장에서 서로 다른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적인 운용 구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용절차」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음¹⁾.

개정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항공자산운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재난관련기관²⁾이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 구조 등을 위해 동 체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항공자산의 통합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재난관련기관별 재난 대응 회전익·고정익항공기 보유 현황]

(단위 : 기)

구 분		회전익항공기	고정익항공기	비 고
긴급구조기관	소방청	34	-	*산불진화헬기
	해양경찰청	20	6	
긴급구조지원기관	국방부	143	[확인불가]	*산불진화에 가용 가능한 헬기
	국토부	-	3	
	경찰청	20	-	*산불진화헬기 12대
	산림청	55	-	*산불진화헬기
	기상청	-	1	
	국립공원관리공단	1	-	*산불진화헬기
지방자치단체		86	-	*산불진화헬기

(자료 : 산림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방부의 고정익항공기에 대해서는 확인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 1) 국회입법조사처(2025), 「재난 대응 항공기 운용상 쟁점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제2454호)
- 2) 재난관련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모두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공공분야 드론 보유 일반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교육용	농업·방제	측량· 점검·관측	촬영·방송	스포츠· 퍼포먼스	운송·물류	기타
계	14,231	9,446	571	1,837	594	186	10	1,587
국가기관	10,558	8,495	420	433	209	167	-	834
지자체	2,501	763	146	781	344	19	10	438
공공기관	1,172	188	5	623	41	-	-	315

(자료 : 항공안전기술원, 2025년 드론산업 실태조사)

다만, 개정안은 항공자산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공자산운용체계 구축,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동 체계의 구축·운영의 범위나 관리하는 정보의 대상 등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서 정하는 ‘항공자산’의 의미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예시적으로 회전익항공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항공자산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용절차」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재난 유형별로 주관기관이 회전익항공기(헬기)의 공역 관리와 지휘통제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고정익항공기, 드론 등 다양한 항공자산의 통합 운용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항공자산운용체계 사용을 통해 운용될 항공

자산의 범위에 고정익항공기와 드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항공안전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상 정의 규정을 인용하여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항공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³⁾.

둘째, 항공자산운용체계의 개념 및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개정안이 재난관련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항공자산을 운용할 때에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에서 항공자산 운용의 정책·기준·절차의 통합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임.

이러한 항공자산운용체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인 국방부는 보유 중인 항공자산 운용 정보에는 「군사기밀 보호법」 상 군사기밀에

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 개정안의 항공자산운용체계의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청은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정책·기준·절차를 총괄하는 체계로 한정하고, 항공자산의 운항관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각 기관별 항공자산 운항관리 관련 법령 현황]

구 분		관련 법령
긴급구조기관	소방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긴급구조지원기관	국방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토부	「공항시설법」
	경찰청	「경찰항공 운영규칙」, 「경찰장비관리규칙」
	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범정부 산물진회헬기 통합 운영규정」, 「산림항공운항규정」
	기상청	「기상법」, 「기후변화감시에측법」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 「산림재난방지법」

(자료 : 행정안전부)

셋째, 현행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난관리자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항공기를 재난관리

- 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설 설치·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조정·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통제·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③ 119항공운항관제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재난관리재산)으로 규정하고⁵⁾,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등의 동원명령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재난관리자원법」에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재산에 대해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을 이용하여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⁶⁾, 이는 재난 발생 시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목적임⁷⁾.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을 말한다.

3. "재난관리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이하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이하 생략)

6)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재난관리재산에 관하여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7) 다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에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해양경찰청)의 항공기와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산림청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임차 항공기만 기록·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재난 중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대책본부에서는 산불 방지 대책에 관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화 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공중진화반장을 임명하여 산불 발생 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항공기 또는 민간항공기를 총괄지휘 하도록 할 수 있음⁹⁾.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항공자산운용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현행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발생 시 항공자산의 동원·활용·

한편, 국방부는 군 본연의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군수품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 상 공개가 제한되므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에 기록·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임.

- 8)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관할 지역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된다.
-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산불을 예방·대비·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5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운용,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 9)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1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임무 등) ④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발생 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항공기 또는 민간항공기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공중진화반의 공중진화반장을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지휘와 관련된 규정과 충돌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임.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같이 재난관리자원의 일부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별도의 운용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에 대해 현행 「재난관리자원법」 체계와의 중복 여지 및 별도 구축·운영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